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 第2項에 대해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蘇中天委員 同意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군데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第17條에서 用品이라고 할 때 필요없는 물건인데 그 판단 기준은 어디다 둥니까? 用品이다. 用品이라고 할 때 處分을 하고자 할 때 어떤 基準을 두어서 합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耐用年數 基準입니다.

○蘇中天委員 耐用年數 基準으로요? 그러면 지금 300萬원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세 臺 내지 네 臺 價格인데 500萬원 以上 그러면 너무 限度額이 높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賣却을 할 때 鑑定機關에 의뢰를 하면 鑑定費用과 또 鑑定期間이 길어지거든요. 그것을 그 전에는 300萬원 以上되면 하는 것을 500萬원 以上만 그렇게 하고, 500萬원 未滿의 경우는 鑑定機關에 費用을 들여가지고 하지 않고, 市場調査를 통해서 價格算定을 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蘇中天委員 그러나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500萬원이라고 하면 우리 市의 財産이 그 限度額이 너무 높지 않느냐, 基準이……. 그런 생각이…….

○財務局長 裴文煥 그런데 한 가지 報告드릴 것은 여기보면 取得 당시의 價格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그것이 5萬원……. 그런 것을 가지고 費用들여 가면서 자꾸 鑑定機關에 자꾸 시일이 길리고 하기 때문에 合理的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蘇中天委員 네.

○李秉守委員 鑑定機關에 의뢰하면 오히려 더 헐게 살 수 있는 것을 高價로 購買하는 병리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柳準向委員 현재 이것이 鑑定料도 안 나올 경우가 있죠. 팔아서……. 손해보는 것이 더 많다고…….

○蘇中天委員 執行部側 얘기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原案대로 通過시켜 줄 것을 同意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再請 있습니까?

(「네,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三請있습니까?

(「三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는데 蘇中天委員께서 同意를 해 주셨습니다. 再請, 三請이 나왔기 때문에 原案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제8조 이하에서 같다)”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제1항중 “내구년수가 1년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를 “소모품에”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분임 물품출납원이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분임 물품출납원이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으로 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경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령 제130조 제1항”을 “제11조의 2”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朴尙東 委員 여러분! 議事進行에 協調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財務局長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15分 散會)

○出席委員

朴尙東	李聲九	蘇中天
全潤杓	柳準向	金順愛
李秉守	李敏國	俞相根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財務局長 裴文煥